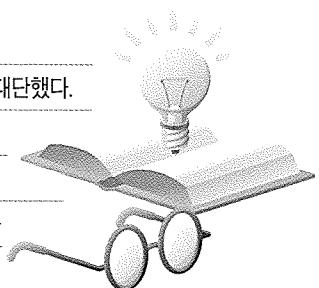


# 공정위 유통시장 실태조사 처분, 너무 심했다

## 법원, 캐리어 피해 전문점 소송에 대해 조정권고 결정

지난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의 자판기 분야 실태조사를 통한 해당 전문점 처분의 여파는 대단했다. 자판기 부실판매 문제が 외부적인 제재를 받으며 변화를 강요당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여파로 심각한 시장 위축을 경험해야 했다.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공정위 악재는 치명적이었다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소송까지 진행을 했던 업체들이 있다. 당시 공정위 실태조사를 통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캐리어 6개 전문점 중 일부는 그 처분의 부당성에 반발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막강한 공정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통해 일정 권리를 회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하지만 소송 유통점들은 아무리 정부정책이라 할지라도 부당한 부분은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법적대응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올 1월말 서울고등법원의 놀라운 결정이 이루어졌다. 서울고등법원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권고를 진행했고, 양쪽이 이를 받아들여 소송이 일단락되었다. 여기서 조정권고가 난 사항은 공정위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동판매기 전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처분의 취소이다. 결국 이 조정결정은 자동판매기 유통분야에 서슬 퍼렇게 휘몰아쳤던 공정위의 강도 높은 제재가 무소불위(無所不爲)가 될 수 없음을 뒤늦게나마 입증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이번 조정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 특수거래보호과에서는 자판기 구매를 둘러싸고 급증하는 소비자 클레임 문제를 개선하고자 자판기 산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에 착수했었다.

특수거래보호과는 자판기 분야의 메이저 업체인 삼성 광주전자, 캐리어 LG(당시 상호) 본사 및 양사 매출상위 전문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2004년 2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전문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제재조치를 받은 캐리어 LG 6개 전문점, 삼성광주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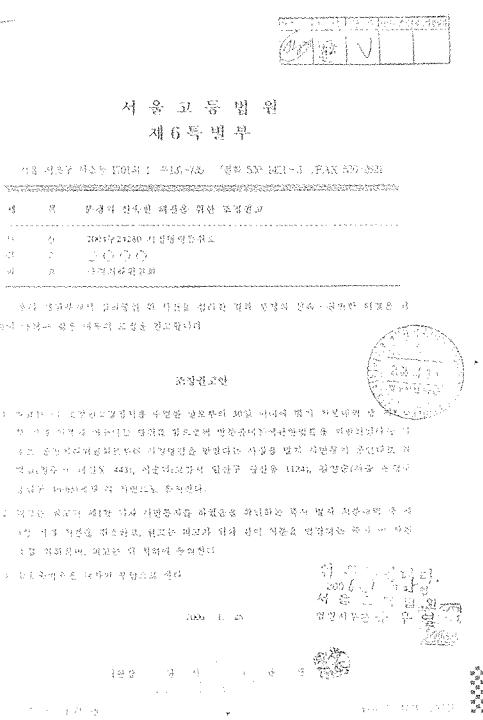
5개 전문점 등은 이같은 공정위의 조치에 적극 반발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공정위 특수거래보호과의 조치가 기존 산업계가 시행중인 자판기 표준약관의 적용과는 별도로 방판법 사업권유거래 조항들을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서 산업현실과 특성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부과했다는데 있었다. 게다가 그 처분의 강도가 너무 높다는 점도 해당 전문점 반발에 불을 지피게 했다. 과태료 100만원 부과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판기 전구매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라는 결정은 받아들이기 힘든 처분이었던 것. 만약 공정위 처분대로 자판기 전구매자를 대상으로 공

이번 조정 결정은 해당 유통점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폐거라 할 수 있다. 막강한 무소불위의 공정위 결정을 뒤집은 판결인 동시에 부당한 처분에 굴복하지 않았던 해당 유통점들의 불굴의 의지의 산물이다. 비싼 소송비용을 감당해 가며 이번 대응을 진행했던 유통점들은 거의 불가능할 듯 보였던 공정위 처분의 조정결정을 이끌어 냈다.

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게 되면 그 파장은 대단할 수밖에 없다. 정상적으로 자판기를 구입하여 운영하는 소비자들도 이 통보에 동요하여 기계 반품 요청이나 할부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봇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같은 상황이 심화되면 해당 유통점들의 파산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렇듯 전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면통보는 일시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업체의 생존권이 결부된 심각한 문제이다. 이 시점에서 캐리어 산하 일부 전문점에서는 법적인 대응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법적인 공동 대응을 통해 공정위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변호사를 선임해 공정위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이의신청을 통해 자판기 방문판매의 사업권유거래 적용 부당성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에서 집행한 정책이 이의신청을 통해 변복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이 사안은 서울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올 1월 25일에 법원의 조정권고 결정이 난 것이다.

### 조정결정이 갖는 의의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에서는 시정명령 등 취소에 대한 사건을 심리한 결과, 분쟁의 신속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정권고안을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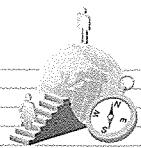
우선 원고인 해당 유통점은 조정권고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원하는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시·시행해 기관마다 이를 알리도록 하거나(443), 서울지역 내에서 일관된 확장을 1124, 청장판(대)을 속성하고 규제 및 관리에 당사자에게 협력하도록 한다.

이제는 원고가 제1항 제1호 가항목에 따른 판결을 확장하여 복수 멀티 체인과의 주제에 대해 적용을 명시하고, 원고는 원고가 원하는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이를 확장하여, 원고는 당 체계에 등록한다.

제3항 제3항은 원고와 당 체계로 관리된다.

2012. 1. 25.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처장

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서면통지 문안대로 일부 소비자에게 통보한다. 여기에서 일부 소비자란 해당 유통점과 거래관계에 있어 클레임 관계가 얹혀 있어 공정위 시정명령의 계기가 되었던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그 대상은 소수에 불과하다. 두 번째, 피고인 공정위는 원고가 위와 같은 기재 서면통보를 하였음을 확인하는 즉시 별지 처분 내역 중 제3항의 기재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처분을



외부적인 시장개입으로 시장흐름이 좌지우지되는 전근대적인 상황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여 유통의 제대로 된 흐름을 유도하는 주체는 당연히 산업계가 되어야 한다.

변경하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며, 피고는 취하에 동의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 3항의 기재 처분 취소는 공정위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동판매기 전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처분을 말한다. 즉 소송의 가장 큰 이유가 되었던 전구매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라는 공정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이번 조정 결정은 해당 유통점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쾌거라 할 수 있다. 막강한 무소불위의 공정위 결정을 뒤집은 판결인 동시에 부당한 처분에 굴복하지 않았던 해당 유통점들의 불굴의 의지의 산물이다. 비싼 소송비용을 감당해 가며 이번 대응을 진행했던 유통점들은 거의 불가능할 듯 보였던 공정위 처분의 조정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로 인해 소송당사자인 해당 유통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해소되게 되었다. 자판기를 구매한 전구매자를 대상으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려했던 계약해지가 속출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이다.

한 가지 이번 결정의 아쉬운 점은 자판기 방문판매의 사업권유거래 적용의 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판기 방문판매를 사업권유거래로 볼 수 있느냐는 구매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언제 어느 때라도 임의해지를 신청(해당손을 지불)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느냐와 결부된다. 이 부분은 해지권의 남발로 판매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지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은 고수해 왔다. 고가의 영업용기기인 자판기를 사업권유거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적 논리로 이번 소송을 진행해 왔었다.

만약 공정위의 사업권유거래 적용이 부당하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왔으면 더할 나위가 없는 결과였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고법의 조정결정을 받아드림으로서 사업거래권유의 적용 합법성까지 준거하는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조정권고 결정까지 만이 라도 도출해 낸 것을 높이 평가를 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공정거래의 시장확립도 중요하지만 과다한 처벌로 해당업체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상황은 분명 잘못되었음을 입증시켰다.

한편으로는 다시는 공정위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율적 시장대책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고 있다. 외부적인 시장개입으로 시장흐름이 좌지우지되는 전근대적인 상황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여 유통의 제대로 된 흐름을 유도하는 주체는 당연히 산업계가 되어야 한다.